

기업의 신용훼손과 그 구제

김 동 환
변호사

신용의 훼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손상이므로 언론매체와 같이 광범하게 전파되는 경우 그 손상효과가 엄청날 뿐 아니라, 언론자체가 공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용손상의 질적 효과도 심각한 것이어서 특히 논의할 가치와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신용의 훼손행위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손상이며 그 결과로서 경영이익의 감퇴라는 유형적 손해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신용을 훼손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며, 민법은 이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서 론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 20 조 2 항은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 조 1 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대전제로 하면서 그 제한의 근거를 위와 같이 제 2 항에 마련한 것이다.

- ☐ 서울대학교 법대, 서울지법판사. 공정거래위원
- ☐ 저술 「증인의 조사방법에 관한 고찰」 외
- ☐ 현재 변호사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 16 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동 헌법 제 22 조 1 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사생활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사생활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만약 언론과 출판이 이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위에서 본 헌법의 규정에 비추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에 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우선 언론기본법 1),2), 형법 3), 민법 4) 등의 제규정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간의 생활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행동유형 또한 복잡하여 짐에 따라 오늘날 명예나 권리(언론기법 제 3 조) 또는 사생활의 자유와 재산권의(헌법상 개념)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과 비법인 사단 등 이른바 단체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⁵⁾

이와 같은 단체의 명예라는 것은 그 명성 품격 및 신용에 관한 사회적 평가라는 뜻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인 기업은 그것이 자연인이 경영하는 것이든 법인(또는 비법인 사단)이 경영하는 것이든 사회적으로 독립된 평가대상이 되는 한, 명예와 신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물론 기업의 소유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기업의 명예는 바로 소유주체인 자연인의 명예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며, 특히 권리의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동일한 자연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명예와 소유주인 자연인의 명예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그 소유주인 자연인의 사생활과는 독립된 나름대로의 생활영역(영업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을/자연인형태로 소유하는 것과 법인(또는 비법인 사단)의 형태로 소유 경영하는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하나의 사회적 존재라고 보아 논의하고자 한다.

II. 신용주체로서의 기업

1. 신용이란

신용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급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 기업은 많은 상대방과의 상호거래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거래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신뢰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기업의 지급능력은 결국은 기업의 재산경영능력, 업종, 장래에 있어서의 전망, 경쟁동업자와의 관계 등 실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 다시 말하여 자기자본에 비하여 부채가 과다하다든가 자산의 구성이 고정투자에 편중되어 있다든가 유동부채가 과다하다든가 하는 요인들이 기업의 지불능력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종이 이미 시기를 놓친 사양품목이라든가, 경영진에 내분이 있어 정상운영이 어렵다든가, 강력한 경쟁기업이 등장하여 시장에서의 몫이 감축될 수 밖에 없다든가 하는 요인들은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지급능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따라서 사회적 평가를 낮추게 된 것이다.

기업의 신용은 이와 같이 지급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해석할 때 기업의 지급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실 예컨대 기업의 사실이 필요이상 호화스럽다, 불필요한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다, 사원에 대한 대우가 부실하다는 등 윤리적인 사항에 관한 사회적 평가는 이것을 기업의 명예에 관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활동을 엄격하게 경영적 활동과 경영과 무관한 활동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기업에 대한 각종 유형의 사회적 평가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급능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구별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며, 또 그것을 구별한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라 할 것이다.6)

2. 신용의 주체로서의 기업이란

오늘날 기업의 규모가 거대화하고 그 기능이 다양화함에 따라 조직형태도 법인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긴 하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자연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예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연인과 법인은 다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어느 형태의 기업이든 신용의 주체가 되는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구성원과 달리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독자적인 사회활동을 하며, 따라서 사회적 평가대상이 되는 비법인 사단도 또한 신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7)

한편 자연인이 단독으로 소유 경영하는 기업은, 그 자연인과 독립하여 명예와 신용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비록 자연인 일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며 경영하는 기업이라도 그 규모나 활동내용으로 보아 이미 그 자연인과는 독립하여 독자적인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인 경우 이것은 기업 그 자체를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보아 비법인 사단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III. 언론에 의한 신용훼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신용을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한계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그 실정법상의 제한은 언론기본법, 형법, 민법 등에서 볼 수 있다.

1. 언론기본법과 신용훼손책임

언론은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언론기본법 제 9 조) 그와 같이 상당한 주의를 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언론기본법 제 3 조 제 3 항)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그 공표사항의 진실성 및 내용이나 출처가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 기타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어떤 형태이든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민법과 신용훼손책임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적어도 책임무능력자가 아닌 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령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민법 제 751 조).

여기에서 타인의 명예라 함은 협의의 명예뿐 아니라 기업의 신용과 같은 광의의 사회적 평가를 포함한다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이론이 없다. 따라서 언론이 기업의 신용을 해하는 보도를 하였을 경우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언론기본법에 의한 책임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3. 형법과 신용훼손책임

형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보아 명예와 신용으로 양분하고 있다.

광의의 명예를 사람에 대한 모든 부면에 걸친 사회적 평가라고 규정하고, 그 중 경제적부면, 환언하면 사람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특히 구분하여 신용이라고 8) 파악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허위인 사실을 보도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게 된 경우(구체적으로 훼손된 결과가 발생되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형법상의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보도로 기업의 명예를 해하고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는 이중적 경우 상상적경합으로 보아 중한 죄인 신용훼손의 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데 반하여 신용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IV. 신용훼손의 유형

언론이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국 그 매체를 통한 보도에 의하는 것이다.

언론 그 자체도 구성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직체이므로 언론 아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상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타인의 신용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면 특히 논의할 여지없이 일반례에 따라 해석처리 될 것이기에 특별한 의의를 두고 따져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언론은 매체에 의한 보도가 그 효과에 있어서 엄청난 것이기에 특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신용의 훼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손상이므로 언론매체와 같이 광범하게 전파되는 경우 그 손상효과가 엄청날 뿐 아니라, 언론자체가 공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용손상의 질적 효과도 심각한 것이어서 특히 논의할 가치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론의 신용훼손행위는 그 평가의 대상이 무엇이나, 평가한 내용이 어떤 것이나, 평가한 방법이 무엇이나 하는데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평가의 대상이 무엇이나 환언하면 기업자체에 대한 평가, 기업 경영인에 대한 평가, 기업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평가,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평가, 기업과 타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 등 평가의 대상과 내용별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 기업자체에 대한 평가

기업에 대한 신용의 훼손은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유형이다. 기업의 신용은 그 주체가 기업이며, 따라서 기업 그 자체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부당한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을 기업의 이름을 거시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라 할 것이다.

① 82 서울중재 14

시민을 울리는 각종 사기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고 있으며, 요즘 서울시내 각 경찰서와 사회단체에는 피해자들이 찾아와 당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획기사에서 각종 사기 사건의 실태와 사기수법 근절방안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실업주식회사의 회사간판 마크 상품스티카 등을 보도사진(동사진)으로 방영하는 방법.

② 82 경기중재 1

「남양주군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신축이 대상자가 잘못 선정돼 계획만 발표된 채 반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이 중단상태에 있고, ×씨는 현지에 ××종합병원 신축예정지라는 거창한 간판만 설치했다가 수개월 만에 자진 철거했다」라고 신문에 보도하는 방법.

③ 84 서울중재 6

가짜 휘발유 대량생산에 관한 고발기사에서 경기도 ××시 ××동 272 번지에서 ××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나프타를 정제하여 도료용 용제인 신나 및 유성기초도료 등을 생산 판매하여 왔으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그 공장에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듯이 그 과정을 추적 보도하는 방법.

④ 84 서울중재 18

사람들의 고급 사우나탕 출입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열탕이나 증기탕에 오래 있게 되면 피부의 각질세포층이 파괴되어 가려움증, 모낭염 등 각종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 피부가 건조하게 되며 피부에 갈색의 색소 침착증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연세대 의대 박윤기 교수의 말과 함께 피부병 환자들 환부를 보기 흉하게 긁고 있는 장면과 「××× 사우나」라는 특정업소의 간판과 실내 등을 배경화면으로 방영하는 방법. 등 기업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명예와 신용에 관계되는 사실을 보도하는 유형을 볼 수 있다.8)

2. 기업 경영인에 대한 평가

기업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기업 경영인에 대한 평가는 그 자체가 당연히 기업의 신용훼손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인이 스스로 소유하며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 그 자연인과 기업은 실체상 하나로 보아 자연인에 대한 부당한 평가는 그것이 바로 기업의 신용훼손으로 결부될 수 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인 경우라도 경영업무를 주관 담당하는 임원 뿐 아니라 그 소속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평가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때 그것은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① 81 부산중재 1

「아파트건설업자인 ××주택개발 대표 ×××씨는 부산시 ×구 ××동에 16 평, 23 평형 아파트 3 동 99 세대 분을 시공 무주택자 40 여명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1 억 3 천여 만원을 받고는 골조공사만 한 채 부도를 내고 달아나 버렸다」 고 신문기사로 보도하는 방법.

② 83 부산중재 1

『뽕땅했다, 안내양 몸수색 버스회사 업무과장입건』

『안내양 몸수색 말썽××여객 뽕땅 이유… 간부입건』

『안내양 몸수색 말썽 ××여객 과장입건항의하자 귀향시키기도』 라는 각각의 제목을 달고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뽕땅을 했다면서 안내양들의 몸수색을 한 ××여객 업무과장 ○○○씨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입건하였는데, ○씨는 이 회사의 안내양 ×모양 등 19 명에게 뽕땅을 했다면서 한 사람씩 휴게실로 불러 촛불을 켜놓고 옷을 갈아입게 하는 등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상태에서 몸수색을 했다」 는 내용을 신문기사로 보도하는 방법.

③ 83 서울중재 61

××중 · 고 ×××교장이 84 학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 발부과정에서 평균 60 점 이하의 학생들에게 지원서를 발부치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자 ○ 교감 등 3 학년 담임 4 명이 ×교장에게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교장은 당초방침대로 강행했으며,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학부형들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자, 학교측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감사는 ○ 교감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으며, ○ 교감이 이에 불응하자 ○ 교감을 직위해제 처분하였다는 사건발단과 경위 및 교련의 조사결과 등을 신문기사로 보도하는 방법.

④ 84 서울중재 21

『은행의 횡포 이래도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모씨는 ××은행 화곡동 지점에 1 천만 원을 예금하였다가, 은행에서 필요로 하여 그러니 구좌에서 1 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돌려주겠다는 이 은행담당 ×대리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반년이 지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은행감독원에서 감사가 나와 문제가 되자 화곡동 지점장은 ×씨에게 대리 ×씨와의 개인 대 개인의 금전거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주면 자신이 1 백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여 지점장의 말을 믿고 그렇게 진술서를 써 주었으나, 감사가 끝나자 지점장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전거래일 뿐 은행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잔금을 변제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은행이 필요로 하여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돌려주지 않는 은행의 이러한 처사는 은행의 횡포라는 내용을 방송하는 방법.

등 기업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을 직접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그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보도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그 자체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3. 기업의 업무활동과 제품에 대한 평가

기업은 그 목적하는 바의 영업활동을 하며, 그 결과 각종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목적하는 바 영업 그 자체는 물론 그营业을 추진하면서 전개하는 각종 활동 그리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물건과 용역)은 각각이 평가의 대상이 되며 그와 같은 각종의 대상에 대하여 부당한 평가를 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게 된다 할 것이다.

① 81 서울중재 3

엽면시비용 종합복합비료인 북살에 관하여 『과일 약품 남용 수익급급 성장촉진제 등 뿌려』라는 제목으로 「서부경남지방의 과일 재배농가들이 최근 채 익지도 않은 풋과일에도 성장촉진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중약방 등에는 245DP, 지베린, 북살, 나꾸사꾸 분말 등 수입된 성장촉진제가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방법.

② 82 서울중재 35

소비자보호 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 보호주관을 맞이하여 시행한 불량상품 전시회를 소개하면서 특정제품을 다른 회사제품과 함께 컬러사진으로 적어 「이런 상품 잘 보고 삼시다」라는 사진설명을 붙여서 화보를 게재하는 방법.

③ 83 서울중재 25

『탈선온상 부곡온천』이라는 제목으로 「휴일이면 찾아 드는 수많은 인파에 비해 수용시설이 모자라 바가지 요금의 극성을 부리고 온천 이외의 위락시설이 없는 이곳은 탈선과 향락만이 가득한 이방지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보도하는 방법.

④ 83 서울중재 37

『공유수면 점용허가 없이 유선업』이라는 제목으로 「제주시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업자에게 유선업을 허가해줘 말썽을 빚고 있다. ××관광측은 유선업신고에 꼭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항만 내에 불법으로 선착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다. 더욱이 ××관광측이 유선으로 신고한 7백 4톤급 대형철선은 지난 80년 3월 일본에서 폐선된 배를 모씨가 고철로 사 부산으로 들여온 것으로 엔진이 없는 배인데도 82년 3월 제주항으로 끌어들인 뒤 버젓이 선박검사를 받아 부산으로 등록했다」라고 보도하는 방법.

⑤ 83 서울중재 38

『우유 젖소 유방염 많아 쉽게 변질할 우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젖소의 상당수가 유방염에 걸려 있으며 시판중인 우유의 35%에서 백혈구 죽은 세포(고름)가 대량으로 검출돼 이 때문에 우유가 빨리 부패되고 영양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름 섞인 우유 생각만 해도 역겹다」, 「그러나 실제 경기 일원 젖소의 절반가량이 유방염에 걸려있고, 이들로부터 짠 죽은 백혈구(고름)가 섞인 우유가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보고가 나왔다」는 내용의 보도 방법.

⑥ 83 서울중재 42

「행방을 감춘 돈이 사장되는 것을 반증이나 하듯, 지금 시중에 때 아닌 사제금고 설치가 유행이다. 이 같은 붐 때문에 현재 국내에 10여 개뿐인 금고설비제작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서울 Y 금고 제작소 대표 XXX씨는 최근 들어 사제금고 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는 1백여 개의 금고를 제작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방법.

⑦ 83 서울중재 43

실용신안출원에 관한 구체적인 실명도 없이 특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세워 특정인의 제품이 특허를 도용한 모조품이라고 소개하는 식으로 방송하는 방법.

③ 84 서울중재 33

『아주산 왕달팽이 밀반입 식용 오인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제목으로

「몸체길이가 2cm나 되는 아프리카산 왕달팽이 2천 마리가 대만으로부터 밀반입 되었는데, 이 달팽이는 원산지의 풍토병이 옮겨 올 수 있어 사람이 먹을 경우 뇌일혈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왕성한 식욕으로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는 식용 불가능한 해충으로서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에 적발되어 모두 소각처분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는 방법. 등을 예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업무내용 생산제품 등에 관한 부당한 평가는 기타의 어느 방법보다 직접적이며 중대한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와의 거래를 전제하여 존립하며, 소비자와의 거래는 업무를 통하여 상품(용역)을 판매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업무와 상품(용역)에 대한 부당한 평가는 즉시적으로 소비자의 거래거절을 유발하게 되며, 소비자로부터 신임을 되찾기 위하여는 장구한 시간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임은 재론을 요하지 아니한다.

4. 기업과 타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

기업은 그것이 사회적 존재인 까닭에 수많은 다른 기업과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다른 기업은 서로 거래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또 경쟁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영업과 유관한 관계 이외에도 기업은 다른 기업과 영업 외인 관계(지역사회에의 봉사, 동업자단체에의 참여 등)를 맺어가며 존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 맺게 되는 관계에 관한 평가는 간접적으로라도 기업에 대한 평가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부당한 평가로 인하여 기업의 신용(명예)이 훼손될 경우는 쉽사리 상정할 수 있다.

① 82 서울중재 20

서울의 관문인 김포공항,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에 관한 보도 가운데 서울고속버스터미널건물에 들어선 의류도매상가 이용객이 예상보다 적고, 그나마 부족한 주차시설 때문에 바로 옆에 들어선 뉴코아상가 등 쇼핑센터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어, 현재는 의류덤핑상가로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방법.

② 83 서울중재 1

1 천여만 달러의 한국전자제품 수입실적을 가진 스위스의 ×××주식회사 유명상표인 「○○○○」를 동사의 전 매니저인 ×××가 특허청에 등록하여, 그 상표를 이용한 스위스에의 전자제품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는 방법.

③ 83 서울중재 4

간단한 배지 하나로 314 차례나 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 집안버섯재배, 가정버섯재배가 요즈음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버섯재배방법은 조××씨가 개발한 것이라고 (실은 제 삼의 특허권자가 있음…필자) 동 조××씨의 설명과 함께 보도하는 방법.

④ 83 서울중재 22

「충북 청원군의 ××토기와 경기도 성남의 ×××산업은 납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무독성유약을 사용 질그릇을 생산해 내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방법.

⑤ 83 서울중재 44

『특허도용이 늘고 있다』는 제목으로 「발명실용의장 등 각종 특허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특허를 도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발명 메달리스트회는 최근 20 여명의 회원들 연명으로 그들의 발명품이 도용 당하고 있다고 주장, 유사품을 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에 호소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안××씨는 자신이 개발한 야외용 석유버너 예열장치가 최모 씨에 의해 유사품으로 만들어져 시판되고 있어 당국에 고소, 자신의 아이디어가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방법.

등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관하여 보도한 결과 신용이 훼손되거나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V. 신용의 훼손과 그 구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의 신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훼손당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훼손으로부터 기업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유형은 대체로 3 분 할 수 있다.

1. 형법에 의한 간접구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 9)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10) 사람을 비방 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11) 등은 각각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같은 처벌법조는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인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위반행위가 있는 후에는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법의 존재가 훼손된 기업의 손해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공익의 차원에서 사권의 침해행위를 처벌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언론기본법에 의한 구제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피해의 주체가 누구이든 또는 피해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그 공표가 행하여진 신문, 통신, 방송의 발행인,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¹²⁾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 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또는 그 대리인)와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신문, 통신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¹³⁾

다만 정정보도청구가 있더라도 「기사가 집필자의 학문적 견해를 표시한 것이고, 특정학회에 어떠한 피해를 끼친 사실적 보도라 할 수 없으며, 통설이라 함은 다수인에 의하여 지지되는 학설을 가리킬 뿐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의 설이 이에 속하는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학회의 대표 ×××씨의 학설이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밝혀달라고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바와 같이(84 서울 중재 45)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언론이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¹⁴⁾

이와 같이 언론기본법에 의한 피해의 구제는 신속, 간편하며 정정보도가 기사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신용에 대한 훼손효과가 확산되는 것을 중단시킨다는 뜻에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기업의 비재산적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유효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민법에 의한 구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는 기업의 훼손된 신용을 회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다할 수는 있으나, 이미 발생한 또는 앞으로 발생할 재산적인 또는 비재산적인 손해를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방법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기업의 신용은 무형의 자산이다. 모든 기업일정규모의 유형자산과 그 경영에 따라 얻게 되는 사회적 평가 즉, 신용이라는 무형자산으로 하여 존립,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신용의 훼손행위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손상이며, 그 결과로서 경영이익의 감퇴라는 유형적(재산적)손해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신용을 훼손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며, 민법은 이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기업의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한 것이다.

기업은 그 자체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¹⁶⁾ 명예감정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신용)훼손을 단순히 정신적 감정에 대한 훼손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훼손이라고 볼 때 비록 명예감정이나 정신적 자유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기업의 신용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훼손될 경우 수학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무형의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민법은 비재산적인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82 나 1522 호 사건 1984.1.20 선고판결)은 「법인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비재산권상의 손해라면 모르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법인의 비재산권상의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¹⁷⁾ 민법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그 손해의 내용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모든 무형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구제는 이른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성격상 유사하게 다루어 기업의 역사, 영업종류, 자산 등 기업의 규모, 거래선의 범위, 훼손된 신용의 내용, 신용훼손의 방법, 회수,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 등을 종합 판단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민법은 이와 같은 금전적인 배상방법 이외에도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이 금전배상 이외의 적당한 방법으로는 흔히 사죄광고 등과 같이 언론매체에 의한 해명적인 내용의 광고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죄광고는 언론기본법이 정정보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긴 하나 동일한 매체에 의한 해명이라는 뜻에서 훼손된 신용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 회복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다. □

<주>

- 1) 언론기본법 제 3 조 3 항: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언론기본법이 정하는 신간 통신 등 정기간행물 이외의 출판물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없다.
- 3) 형법 제 309 조 제 1 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 307 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9 조 제 2 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 307 조 제 2 항 죄를 범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 307 조 제 1 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 조 제 2 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 313 조: 허위의 사실을 유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4 조: 전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민법 제 751 조 제 1 항: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훼손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단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으나 단체는 명예감정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었으나 단체 또는 그 명성 · 평판 · 신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대법원 판결(65 다 1707 호 1965. 11. 30. 선고)은 「법인의 명예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와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침해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로 판시하였다.

대법원판결(4291 형상 539 호 1959. 12. 13. 선고)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은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인격을 가진 단체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6) 앞에 본 대법원판결도 「법인의 명예신용이 침해되어…」라고 판시하여 특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다. 지원방양교수는 「기업이 피해자인 경우 명예와 신용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죄(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필자)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일본 신문연구 1971 년 5 월호 기업보도에 관한 형법상의 제문제).

7)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직 발견되지 아니하나 일본의 하급심판례는 화교자치회(동경고판 소화 29 년 5 월 11 일) 노동조합(선대지판 소화 38 년 5 월 22 일) 상도인회(동경지판 소화 43 년 1 월 31 일) 교원 노조지부(동경지판 소화 44 년 12 월 16 일)등에 대하여 명예권의 주체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8) 예시한 사안들은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으로 제기되었다가 취하되는 등 그것이 신용훼손이 되는 것이냐 여부의 종국판단을 받지 아니한 채 종결된 것들이 많으나 본 고에서는 행위유형으로 의미가 있어 인용한 것이다.

9) 형법 제 313 조

10) 형법 제 307 조

11) 형법 제 309 조: 텔레비전 기타의 영상매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 언론기본법 제 49 조 제 1 항

13) 동조 제 2 항 다만 동 법항은 신문 통신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 라디오 등 방송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성질상 신문 통신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단시일 내 정정보도를 하게하여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14) 언론기본법 제 50 조

15) 민법 제 751 조

16) 기업이 단체가 아니고 자연인이 소유, 경영하는 경우에는 기업 그 자체를 독립된 사회적 존재라고 볼 때 법인 등과 구별할 실익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17) 일본 최고재판소 쇼와 39 년 1 월 28 일 선고, 쇼와 34 년 (재)제 901 호 사죄광고 및 위자료 청구 사건판결. 일본 민법의 해당조문은 우리민법과 동일하다.

18) 민법 제 764 조